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11
----------	------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1일, 서윤기 의원 외 10명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왔음.
- 이에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학교·학생행복지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다.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라.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서윤기 의원 외 10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11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제정조례안은 학생 및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 증진을 통해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 외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측정·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¹⁾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1) UN '세계행복보고서', OECD '더 나은 삶 지수' 등

- 특히 OECD는 각 나라 학생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삶의 질 관련 지표도 구축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에서 발표한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기록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조사 대상 71개 국가 중 65위에 그쳤습니다.²⁾
-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한국방정환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7,4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였습니다.³⁾
-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과도한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⁴⁾ 어린 시기의 삶의 질 수준 차이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 더 큰 격차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⁵⁾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행복수준을 파악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학생들의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이를 측정·발표하였으나⁶⁾ 이후 중단되었는바, 동 제정조례안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도자료 : 한국 학생 수학은 OECD 최상위, 삶 만족도는 최하위권(중앙일보, 2019.12.3.)

3) 보도자료 : 아이들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꼴찌 수준…언제쯤 오를까?(한겨레, 2019.5.14.)

4) 보도자료 : 韓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세계 상위권인데 흥미도는 만년 '꼴찌'(매일경제, 2020.12.8.)

5) 『How's Life? : Measuring Well-being』(OECD, 2015)

6) 보도자료 : 서울학생 행복지수 5점 만점에 '3.8'…초>중>고 순(중앙일보, 2012.4.3.)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기본원칙, 정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을, 본칙 규정으로 계획 수립(안 제6조~제8조), 행복지수 등(안 제9조), 행복위원회(안 제10조), 행복영향평가(안 제11조), 예산 운영(안 제12조), 시범학교(안 제13조), 콘텐츠 등 개발·보급(안 제14조), 행복 증진 교육(안 제15조), 위탁(안 제1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7조)을 규정하는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학교”, “학생”, “학교·학생 행복”, “행복 격차”를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학생 행복”을 교직원 등과 학생이 체감하는 ‘일상생활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⁷⁾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보편적인 의미의 행복을 정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지표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학생 행복”과 “행복 격차”는 주관적인 요소로 정의, 특정, 수치화가 어려우므로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136, 2021.4.13.).
- 그러나 “학교·학생 행복”과 “행복 격차”는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7) 표준국어대사전

‘행복지수’로 수치화함으로써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실제 OECD 등 국제기구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통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바,

학교·학생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안 제3조에서 “학교·학생 행복”과 “행복 격차”에 대하여 정의한 것은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3)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책의 유연한 수립·시행을 위해 각 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⁸⁾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책무에 관한 규정의 표현방식은 그 자치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바,⁹⁾ 기본·시행계획 수립, 행복지표 개발·보급, 행복지수 측정 및 결과 공표 등 동 조례안의 주요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안 제4조 또한 강행규정의 표현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포함 사항을,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 반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6조제3항의 의견 개진 주체를 ‘학교구성원, 전문가 등’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대상을 구체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는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

8)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9)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회도 교육주체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와 같은 공식적인 학부모기구 뿐만 아니라 책맘, 폴리스맘, 급식맘 등 학부모단체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 기본계획의 수립에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¹⁰⁾

5) 학교·학생행복지수 등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학교·학생 행복지표의 개발·보급과 이를 지수화한 행복지수의 측정, 공표, 계획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과중, 유사 지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안 제9조를 ‘삭제’ 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학생의 행복 수준은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측정 등이 선행되어야 실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행복지수는 각 지역 간 행복 격차 파악과 해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¹¹⁾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복지표와 관련하여 2011년 ‘서울학생 행복 지수’ 를 개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측정한 바 있고,

현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의 일환으로 ‘청소년 행복 지수’ 를 매년 10월~11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¹²⁾

○ 또한 민간기관에서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이 행복지수(삶의 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10) 현재 “학교구성원”과 관련하여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구성원에 학부모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학교구성원이 학생과 교직원을 의미하고 있고 동 조례안에서 학교구성원에 대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에 학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11) 보도자료 : '청소년 행복지수'도 강남3구가 최상위, 강북권3구 8점↓(오마이뉴스, 2021.2.22.)

12) (2019) 2019.10.14.(월) ~ 11.3.(일) 온라인 설문 조사, 청소년 6,247명 참여
(2020) 2020.11.4.(수) ~ 11.23.(월) 온라인 설문 조사, 청소년 4,393명 참여

[표] 서울시교육청 및 민간기관 행복지표

행복지수	행복지표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행복지수'(2012~2013)	학교생활, 가정생활, 자신, 전반적 만족도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 행복지수' (한국방정환재단)	삶의 만족도(나의 삶, 주위 관계, 지역사회, 소속 학교), 사회적 신뢰도(가족, 이웃, 교사)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학교생활 만족, 어울림, 소속감, 외로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삶의 질'	건강, 주관적 행복감,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 보건복지부에서도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 업무 가중을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서울시교육청은 ① 2011년에 개발하였던 행복지표의 활용 여부, ② 현재 사용하는 혁신교육지구 행복지표의 활용·확대 여부, ③ 타 기관과의 협력 또는 ④ 타 기관의 행복지표와 차별성을 갖는 지표의 개발 여부 등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6) 학교·학생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학교·학생행복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들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위원 구성¹³⁾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안 제10조를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3)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 하에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외 15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각 정책자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 개선,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등 주로 총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있는 바,¹⁴⁾

학교·학생행복위원회로 하여금 주로 행복지표·지수, 행복 격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 전문성 측면에서도 동 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들과 중복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제1호에도 전문성을 가진 위원에 대하여 규정¹⁵⁾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2020년 1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에 따른 ‘시민행복위원회’ 를¹⁶⁾ 무리 없이 구성하였는바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에서 동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학교·학생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한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기능(참여협력담당관-12806,2020.11.23.)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 교육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15)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6) 제11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행복영향평가가 기존 영향평가와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시행 과정에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¹⁷⁾
- 그러나 기존 영향평가는 인권, 성평등 등 학생의 천부인권적 성격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하는 반면, 행복영향평가는 학생의 사회권과 관련이 있어 그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되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기타 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기타 의견으로 ①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¹⁸⁾은 국민이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다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②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궁극적인 교육활동 목표는 행복 추구보다는 배움과 성장이며 ③ 업무 가중 및 행정력 낭비 가능성 등의 사유로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그러나 ①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2항¹⁹⁾ 및 「교육기본법」 제27조제1항²⁰⁾에서 동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② OECD와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최상위 목표에 두도록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구축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²¹⁾

17)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4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

18)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9) 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0)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업무 가중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시행과정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자구를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11
----------	------------

제안연월일 : 2021년 6월 1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I. 수정이유

-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반영 대상에,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학교 구성원, 전문가 등” 을 “학교 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등” 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학교 구성원, 전문가 등”을 “학교 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등”
으로 한다.

원안	수정안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p> <p>1. ~ 6. (생략)</p> <p>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 <u>전문가 등의</u>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원안과 같음)</p> <p>1. ~ 6. (원안과 같음)</p> <p>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 <u>학부모, 전문가 등의</u>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에 대하여 행복이 가지는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학교와 학생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학생이 행복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학생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행복 정책을 추진한다.

③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생을 지도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④ 학교와 학생의 행복을 위한 정책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학교·학생 행복”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과 제2

호에 따른 학생이 체감하는 일상생활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4. “행복 격차”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과 학생에게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학교·학생 행복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여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학생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학생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2.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학교·학생 행복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학교·학생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교육감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학교·학생행복지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학생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학생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학교의 구성원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학교·학생행복지표에 반영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학생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학교·학생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학교·학생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학교·학생 행복 실태조사 및 학교·학생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학생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학생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중심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학생행복지표 작성 및 학교·학생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학교·학생 행복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학생 행복 증진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예산 운영) 교육감은 교육청의 예산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학교·학생 행복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학생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행복교육 콘텐츠 등 개발·보급)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학교·학생 행복 증진 교육)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학교·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학교·학생행복지수의 개발·측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학교·학생 행복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학교·학생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